청도군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첨 부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1. 계약목적

가. 센터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센터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계약기간

가.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나.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되 경우에 따라 안내로 갈음 할 수 있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첨 부 3]와 같고 그 밖의 비용(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첨 부 4]와 같다.

[첨 부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첨 부 4]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4. 이용료 납부

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직접 전달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

라.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으로 한다.

5. 신원 인수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권리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할 의무

나.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규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위한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3) 이용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의 이용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권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 몇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모든 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4)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5)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6. 계약해지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표준약관 계약서 및 확인사항의 내용에 있는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가.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및 이용목적

1)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2)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4)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나. 수집대상정보 항목

1)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 포함)
2)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3)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4)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문서는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기간 내로 함

[첨 부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야간보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청도군주간보호센터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성명	권 덕 수 (인)	연락처	054-370-5178
	주 소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5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 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이용시간	오전 08시30분 ~ 오후 17시30분	오전 08시30분 ~ 오후 15시30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 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 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금	08:30 ~ 17:30	공휴일은 휴업
토	08:30 ~ 15:30	공휴일은 휴업

④ '을'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____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 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 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
3. '갑' 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

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 ~ 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으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필요요구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을' 은 '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 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 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 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갑' 은 '을'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 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 은 '갑'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 은 즉시 '병' 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권 덕 수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첨 부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 1월부터)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 이상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첨 부 4]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비급여 항목	금액	비고
식재료비	점심 : 2,500원 저녁 : 2,500원	(1식) 기준
간식비	1일 : 1,000원	(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월 : 30,000원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